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참전명예수당 병급 허용〉

■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08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신동욱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4. 6. 28.
3. 회부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Ⅲ. 검토의견 : 참전명예수당 병급 허용

- 개정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u>지급한다</u> .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 ----- ----- <u>지급하되, 참전유공자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u>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 보훈보상체계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은 한 개인이 동일 사건(참전, 군복무)으로 인해 보상금 및 여러 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참전을 포함한 군 복무’를 ‘하나’의 원인으로
보아 보상금과 여러 수당 중 하나를 택일토록 하고 있음.

- 동일 사건으로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공
헌의 정도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일반참전자 신
분으로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해 그 희생과 공
헌의 정도에 따라 상이보상금,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으로 지급하면서 각각의 보상금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음.¹⁾

<동일 사건(참전)에 따른 보상 유형>

(단위: 천 원)

요건 대상 구분	부상 등	훈장	고엽제피해		참전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	참전군인
보상종류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보상금	고엽제후유 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요건기준	상이등급 (1~7급)	무공훈장 (인헌~태극)	상이등급 (1~7등급)	장애등급 (경도~고도)	참전
지급액	608 ~ 3,681	480 ~ 500	608 ~ 3,681	568 ~ 1,175	420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어 7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전상군경으로 보상

자료 : 국가보훈부

□ 그러나,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1) 동일 사건이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병급 허용(독립유공자 자녀이면서 참전유공자인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동시에 수급)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참전 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각각의 전쟁과 관련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두 차례나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한 차례 참전한 참전유공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전쟁에는 참여하였으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자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각각의 전쟁 참여에 대한 수당을 병급하는 경우 그 수당들의 총액(84만원)이 신체적 희생을 입은 참전 상이군경(7급)의 보상금²⁾ 보다 높게 되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보상금 등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 하에서 개정안과 같이 예외가 인정될 경우, 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의 병급 요구도 제기될 수 있으며, 참전을 원인으로 상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유공자도 각각의 수당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참전 7급 상이군경 보상금 월 60.8만원,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의증 정도 수당 월 56.8만원

□ 참고로,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5년간 약 71억원(연평균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참전명예수당 병급(6·25전쟁과 월남전쟁) 허용 시 소요예산>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중복 참전자수(명)	338	306	277	257	227
단가(천원)	420	420	420	420	420
추가 소요예산(백만원)	1,704	1,542	1,396	1,295	1,144

* (참전유공자수) '24년 9월 현재 중복 참전자수 338명, 참전명예수당 '21~'23년 지급인원 증감율△9.5% 적용

** (단가) '24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42만원) 적용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의 수당이 참전 상이군경(7급)의 보상금 보다 많게 되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보훈 보상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상이군경, 훈장을 여러 개 수여한 무공수훈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의 보상수준 상향 요구로 보훈급여금 전반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7